

2024~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2401
----------	------

제출일자 : 2023. 11. 13.

제 출 자 : 달성군



1. 제안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매년 다음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2024~2028) 수립을 통해 우리 군 공유재산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측가능하고 효율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계획기간 : 2024년~2028년(5회계연도)
- 작성대상 : 현재 및 향후 달성군 소유 공유재산
 - 기준가격 : 10억원 이상(취득·처분)
 - 토지면적 : 1,000㎡이상(취득), 2,000㎡이상(처분)
- 내 용
 -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취득, 처분, 사용허가, 대부)
 - 공유재산 특례종합계획(장기사용허가, 사용·대부료 감면)
 - 수입금 징수 및 관리

3. 관련법령

-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4. 2024~2028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1 공유재산 관리·처분 총괄 계획

1. 총괄표

(단위 : 건, 백만원, %)

회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사용허가	313	351.61	313	370.71	313	391.71	313	416.81	313	439.81	
	대부	110	47.3	110	50.6	110	55.7	110	58.9	110	61.9	
	취득	7	26,241	5	19,449	5	79,361	2	54,854	1	5,000	
	처분	1	660	-	-	-	-	-	-	-	-	
일반회계	사용허가	313	351.61	313	370.71	313	391.71	313	416.81	313	439.81	
	대부	110	47.3	110	50.6	110	55.7	110	58.9	110	61.9	
	취득	7	26,241	5	19,449	5	79,361	2	54,854	1	5,000	
	처분	1	660	-	-	-	-	-	-	-	-	
특별회계	사용허가	-	-	-	-	-	-	-	-	-	-	
	대부	-	-	-	-	-	-	-	-	-	-	
	취득	-	-	-	-	-	-	-	-	-	-	
	처분	-	-	-	-	-	-	-	-	-	-	

2. 사용허가 계획

가. 지역별 계획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313	351.61	313	370.71	313	391.71	313	416.81	313	439.81	
회원읍	52	63	52	67	52	71	52	75	52	79	
논공읍	38	101	38	106	38	112	38	119	38	126	
다사읍	4	0.01	4	0.01	4	0.01	4	0.01	4	0.01	
유가읍	18	1	18	1	18	1	18	1	18	1	
옥포읍	14	0.6	14	0.7	14	0.7	14	0.8	14	0.8	
현풍읍	145	164	145	173	145	183	145	194	145	205	
가창면	12	1	12	1	12	1	12	1	12	1	
하빈면	4	1	4	1	4	1	4	2	4	2	
구지면	26	20	26	21	26	22	26	24	26	25	

나. 회계별 계획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313	351.61	313	370.71	313	391.71	313	416.81	313	439.81	
일반회계	313	351.61	313	370.71	313	391.71	313	416.81	313	439.81	
특별회계	-	-	-	-	-	-	-	-	-	-	

3. 대부 계획

가. 지역별 계획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10	47.3	110	50.6	110	55.7	110	58.9	110	61.9	
회원읍	11	3	11	3	11	4	11	4	11	4	
논공읍	6	0.7	6	0.8	6	0.8	6	0.9	6	0.9	
다사읍	2	0.8	2	0.9	2	1	2	1	2	1	
유가읍	8	2	8	2	8	3	8	3	8	3	
옥포읍	21	13	21	14	21	15	21	16	21	17	
현풍읍	17	7	17	8	17	8	17	9	17	9	
가창면	7	2	7	2	7	3	7	3	7	3	
하빈면	2	0.8	2	0.9	2	0.9	2	1	2	1	
구지면	36	18	36	19	36	20	36	21	36	23	

나. 회계별 계획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10	47.3	110	50.6	110	55.7	110	58.9	110	61.9	
일반회계	110	47.3	110	50.6	110	55.7	110	58.9	110	61.9	
특별회계	-	-	-	-	-	-	-	-	-	-	

4. 취득·처분 계획

○ 작성대상 : 중요재산 이상(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

- ※ 영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요재산
- 취득 :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 또는 1,000㎡ 이상
 - 처분 : 기준가격 10억 원 이상, 또는 2,000㎡ 이상

가. 취득 계획

(단위 : ㎡, 백만원)

일련 번호	취득(예정) 연도	회계구분	재 산 표 시				금액 (기준가격)	취득목적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계				20건		278,060	184,905		
1	2024년	일반회계	토지	논공읍 상리 산 25	임야	9,917	2,787	논공 상하리 창작캠핑장 조성	150,980 ㎡ (총 면적)
				논공읍 상리 산 28	임야	13,091			
				논공읍 상리 산 29-1	임야	7,041			
				논공읍 상리 산 29-2	임야	2,479			
				논공읍 상리 산 30	임야	3,967			
				논공읍 상리 산 31	임야	5,554			
				논공읍 상리 산 32	임야	5,531			
				논공읍 상리 산 32-1	임야	4,767			
				논공읍 상리 산 32-2	임야	809			
				논공읍 상리 산 33	임야	15,471			
				논공읍 상리 산 34	임야	7,140			
				논공읍 상리 산 35	임야	17,851			
				논공읍 상리 산 45-1	임야	27,769			
				논공읍 상리 산 45-2	임야	27,769			
				논공읍 상리 122	임야	1,560			
				논공읍 상리 208	구거	198			
				논공읍 상리 121	묘지	66			
				논공읍 하리 565	대	9,114			
				논공읍 하리 563	학교용지	2,033			
				논공읍 하리 512-1	전	59			
			논공읍 하리 513-2	전	126				
			논공읍 하리 895-2	학교용지	174				
				건물		논공읍 하리 565			
			논공읍 하리 565	-	254				

2	2024년	일반회계	토지	현풍읍 일대	대	6,600	2,500	현풍 농기계 임대장 부지	
3	2024년	일반회계	토지	옥포읍 교항리 2947	대	12,007	11,500	달성 증부권 복합문화센터 신축	
4	2024년	일반회계	토지	하빈면 하산리 1043-2 하빈면 하산리 1051-2	전 답	1,005 344	1,567	달성 하목정 주차장 설치	
5	2024년	일반회계	토지	현풍읍 원교리 116	답	1,702	1,012	달성군보건소 주차장 추가조성	
6	2024년	일반회계	토지	달성군 전역 임의 3~4개 소재지	-	5,000	5,000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7	2024년	일반회계	건물	다사읍 매곡리 919-2	-	313.2	1,689	달성군 북부 노인복지관 증축	
8	2025년	일반회계	건물	현풍읍 일대	-	1,320	3,500	현풍농기계 임대사업장 신축	
9	2025년	일반회계	토지	달성군 전역 임의 3~4개 소재지	-	5,000	5,000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10	2025년	일반회계	건물	구지면 응암리 1233	-	8,477	3,300	구지 문화체육 복지센터 신축	
11	2025년	일반회계	건물	화원읍 천내리 417	-	1,100	2,200	학교복합시설 건립	다년도 사업
12	2025년	일반회계	건물	논공읍 금포리 1805-1 논공읍 금포리 1805-20 논공읍 금포리 1805-21 논공읍 금포리 1805-22 논공읍 금포리 1805-24 논공읍 금포리 1805-25 논공읍 금포리 1805-26 논공읍 금포리 1805-27 논공읍 금포리 1805-28 논공읍 금포리 1805-35 논공읍 금포리 1805-36 논공읍 금포리 1805-37	잡종지	1,500	5,449	논공읍민 복지회관 건립	
13	2026년	일반회계	토지	달성군 전역 임의 3~4개 소재지	-	5,000	5,000	마을 공동주차장 조성	

나. 처분 계획

(단위 : m², 백만원)

일련 번호	처분(예정)연도	회계구분	재 산 표 시				금액 (기준가격)	처분목적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계				1건		2,000	660		
1	2024	일반회계	건물	현풍읍 자모리 531 일대	-	2,000	660	장기 방치건축물 철거	

2 공유재산 특례 종합계획

1. 총괄계획

가. 영구시설물 축조

(단위 : 건, %)

구 분	영구시설물 축조					비고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수량		해	당	없	음	

나. 장기 사용허가·대부, 양여 및 사용료·대부료 감면

(단위 : 건, 백만원, %)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장기사용 허가등	4	0.129	4	0.14	4	0.14	4	0.14	4	0.14	
양여			해	당	없	음					
사용료등 감면	21	683	21	721	21	762	21	805	21	851	

2. 항목별 세부계획

가. 영구시설물 축조

(단위 : m²)

일련 번호	특례(예정)연 도	재산표시(토지)			시설물 종류	축조목적 (관련근거)	허가등기 간	갱신 가능 기간	허가조건	비고
		소재지	지목	면적						
				해	당	없	음			

나. 장기 사용허가·대부

(단위 : m², 백만원)

일련 번호	특례 (예정) 연도	재 산 표 시				장기 사용 대상자	허가등 기간	잔여 기간	갱신 가능 기간	사용료등 총액	목적 (관련근거)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계		4건								0.689		
1	2024	토지	현풍읍 성하리 235-4	체육 용지	4.2	대영채비	7년	5년6월	7년	0.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3항	1회 갱신 가능
	2025							4년6월		0.02		
	2026							3년6월		0.02		
	2027							2년6월		0.02		
	2028							1년6월		0.02		
2	2024	토지	다사읍 달천리 135	답	10.44	대영채비	7년	5년6월	7년	0.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3항	1회 갱신 가능
	2025							4년6월		0.01		
	2026							3년6월		0.01		
	2027							2년6월		0.01		
	2028							1년6월		0.01		
3	2024	토지	가창면 대일리 322	답	10.44	대영채비	7년	5년6월	7년	0.00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3항	1회 갱신 가능
	2025							4년6월		0.01		
	2026							3년6월		0.01		
	2027							2년6월		0.01		
	2028							1년6월		0.01		
4	2024	토지	현풍읍 성하리 228-2	체육 용지	89.96	대영채비	10년	5년6월	10년	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3항	1회 갱신 가능
	2025							4년6월		0.1		
	2026							3년6월		0.1		

4	2027	토지	현풍읍 성하리 228-2	체육 용지	89.96	대영채비	10년	2년6월	10년	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3항	1회 갱신 가능
	1년6월							0.1				

다. 양여

(단위 : m², 백만원)

일련 번호	특례(예정) 연도	재 산 표 시				양여 대상자	기준가격	목적 (관련근거)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계				해	당	없	음		

라. 사용료·대부료 감면

(단위 : m², 백만원)

일련 번호	특례(예정) 연도	재 산 표 시				감면 대상자	예정가격			감면목적 (관련근거)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산출 금액	감면 금액	부과 금액		
계		105건				110,048	3,827	3,810	17		
1	2024년	토지	가창면 대일리 322	답	10.44	대영채비	0.04	0.03	0.01	달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제7항	
2	2024년	토지	다사읍 달천리 135	답	10.44	대영채비	0.05	0.04	0.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대한 법률 제11조의 3	
3	2024년	토지	다사읍 문양리 산18-2	임야	8	대영채비	0.001	0.001	0.0003	제5항 "100분의 80감면"	
4	2024년	건물	가창면 가창로1100, 2층 일부	-	70	국방부	0.5	0.5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국가기관 등이 사용하는 경우"	
5	2024년	건물	구지면 창리로 11길 2층 일부	-	65	국방부	0.3	0.3	-		
6	2024년	건물	달성군청 행정동 지하1층 일부	-	80	국방부	0.4	0.4	-		
7	2024년	건물	논공읍 비슬로 1779, 2층	-	125	국방부	1	1	-		
8	2024년	건물	논공읍 논공중앙로 33길 3, 2층	-	290	국방부	1	1	-		
9	2024년	건물	다사읍 매곡로7 2층	-	103	국방부	0.4	0.4	-		
10	2024년	건물	다사읍 서재본길 25, 1층	-	89	국방부	0.3	0.3	-		

11	2024년	건물	옥포읍 비슬로 2215, 3층	-	85	국방부	0.4	0.4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국가기관 등이 사용하는 경우”
12	2024년	건물	유기읍 테크노상업로 95, 2층 일부	-	94	국방부	0.5	0.5	-	
13	2024년	건물	하빈면 하빈로 84길 1, 나동 2층	-	151	국방부	0.3	0.3	-	
14	2024년	토지	하빈면 감문리 811-3	도	264	학교법인 달성학원	500	500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하빈면 감문리 812-5	도	63					
			하빈면 감문리 813-1	도	169					
			하빈면 감문리 813-5	대	2,704					
			하빈면 감문리 813-6	도	208					
			하빈면 감문리 814-2	대	838					
			하빈면 감문리 815	대	1,347					
			하빈면 감문리 816	대	4,908					
			하빈면 감문리 820-1	답	915					
			하빈면 감문리 820-2	답	569					
			하빈면 감문리 820-3	답	515					
			하빈면 감문리 821	묘	553					
			하빈면 감문리 823-1	전	21					
			하빈면 감문리 824	답	1,297					
			하빈면 감문리 825-1	답	2,067					
			하빈면 감문리 826-1	답	327					
			하빈면 감문리 827-3	도	60					
			하빈면 감문리 828-4	도	79					
			하빈면 감문리 929-2	학교 용지	218					
		건물	하빈면 감문리 815	-	7,446.54					
15	2024년	토지	현풍읍 성하리 235-4	체육 용지	4.2	대영채비	0.1	0.08	0.02	달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제7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대한 법률 제11조의 3 제5항 “100분의 80감면”
16	2024년	토지	현풍읍 성하리 228-2	체육 용지	89.96	대영채비	0.7	0.6	0.1	
17	2024년	건물	회원읍 비슬로 2594 2층 일부	-	122	국방부	1.4	1.4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18	2024년	건물	회원읍 비슬로 2594 3층 일부	-	134	국방부	1.6	1.6	-	“국가기관 등이 사용하는 경우”

19	2024년	건물	화원읍 설화리 553-41	-	147	정인장애 인복지회 행복올타리 해피베이 커리	6	3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제2호 및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제6항제1호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 기업이 사용”
20	2024년	건물	화원읍 설화리 553-41	-	646	달성문화 재단	87	87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 2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21	2024년	건물	화원읍 설화리 553-41	-	620	달성복지 재단	85	85	-	달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제7항
22	2025년	토지	가창면 대일리 322	답	10.44	대영채비	0.04	0.03	0.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대한 법률 제11조의 3 제5항 “100분의 80감면”
23	2025년	토지	다사읍 달천리 135	답	10.44	대영채비	0.05	0.04	0.0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24	2025년	토지	다사읍 문양리 산18-2	임야	8	대영채비	0.001	0.001	0.0003	“국가기관 등이 사용하는 경우”
25	2025년	건물	가창면 가창로1100, 2층 일부	-	70	국방부	0.5	0.5	-	
26	2025년	건물	구지면 창리로 11길 2층 일부	-	65	국방부	0.3	0.3	-	
27	2025년	건물	달성군청 행정동 지하1층 일부	-	80	국방부	0.4	0.4	-	
28	2025년	건물	논공읍 비슬로 1779, 2층	-	125	국방부	1	1	-	
29	2025년	건물	논공읍 논공중앙로 33길 3, 2층	-	290	국방부	1	1	-	
30	2025년	건물	다사읍 매곡로7 2층	-	103	국방부	0.4	0.4	-	
31	2025년	건물	다사읍 서재본길 25,1층	-	89	국방부	0.3	0.3	-	
32	2025년	건물	옥포읍 비슬로 2215, 3층	-	85	국방부	0.4	0.4	-	
33	2025년	건물	유가읍 테크노상업로 95, 2층 일부	-	94	국방부	0.5	0.5	-	
34	2025년	건물	하빈면 하빈로 84길 1, 나동 2층	-	151	국방부	0.3	0.3	-	

35	2025년	토지	하빈면 감문리 811-3	도	264	학교법인 달성학원	527	527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하빈면 감문리 812-5	도	63					
			하빈면 감문리 813-1	도	169					
			하빈면 감문리 813-5	대	2,704					
			하빈면 감문리 813-6	도	208					
			하빈면 감문리 814-2	대	838					
			하빈면 감문리 815	대	1,347					
			하빈면 감문리 816	대	4,908					
			하빈면 감문리 820-1	답	915					
			하빈면 감문리 820-2	답	569					
			하빈면 감문리 820-3	답	515					
			하빈면 감문리 821	묘	553					
			하빈면 감문리 823-1	전	21					
			하빈면 감문리 824	답	1,297					
			하빈면 감문리 825-1	답	2,067					
			하빈면 감문리 826-1	답	327					
			하빈면 감문리 827-3	도	60					
			하빈면 감문리 828-4	도	79					
			하빈면 감문리 929-2	학교 용지	218					
		건물	하빈면 감문리 815	-	7,446.54					
36	2025년	토지	현풍읍 성하리 235-4	체육 용지	4.2	대영채비	0.1	0.08	0.02	달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제7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대한 법률 제11조의 3 제5항 “100분의 80감면”
37	2025년	토지	현풍읍 성하리 228-2	체육 용지	89.96	대영채비	0.7	0.6	0.1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38	2025년	건물	화원읍 비슬로 2594 2층 일부	-	122	국방부	1.4	1.4	-	“국가기관 등이 사용하는 경우”
39	2025년	건물	화원읍 비슬로 2594 3층 일부	-	134	국방부	1.6	1.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제2호 및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제6항제1호 “취약계층 고용비용을 충족하는 사회적 기업이 사용”
40	2025년	건물	화원읍 설화리 553-41	-	147	정인장애 인복지회 행복울타리 해피베이 커리	6	3	3	

56	2026년		하빈면 감문리 820-2	답	569	학교법인 달성학원	557	557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호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하빈면 감문리 820-3	답	515					
			하빈면 감문리 821	묘	553					
			하빈면 감문리 823-1	전	21					
			하빈면 감문리 824	답	1,297					
			하빈면 감문리 825-1	답	2,067					
			하빈면 감문리 826-1	답	327					
			하빈면 감문리 827-3	도	60					
			하빈면 감문리 828-4	도	79					
			하빈면 감문리 929-2	학교용지	218					
	건물	하빈면 감문리 815	-	7,446.54						
57	2026년	토지	현풍읍 성하리 235-4	체육용지	4.2	대영채비	0.1	0.08	0.02	달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제7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대한 법률 제11조의 3 제5항 “100분의 80감면”
58	2026년	토지	현풍읍 성하리 228-2	체육용지	89.96	대영채비	0.7	0.6	0.1	
59	2026년	건물	화원읍 비슬로 2594 2층 일부	-	122	국방부	1.5	1.5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60	2026년	건물	화원읍 비슬로 2594 3층 일부	-	134	국방부	1.7	1.7	-	“국가기관 등이 사용하는 경우”
61	2026년	건물	화원읍 설화리 553-41	-	147	정인장애인복지회 행복울타리 해피베이 커리	6	3	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제2호 및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제6항제1호 “취약계층 고용비용을 충족하는 사회적 기업이 사용”
62	2026년	건물	화원읍 설화리 553-41	-	646	달성문화재단	96	9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 2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63	2026년	건물	화원읍 설화리 553-41	-	620	달성복지재단	94	94	-	

	2027년	토지	하빈면 감문리 827-3 하빈면 감문리 828-4 하빈면 감문리 929-2	도 도 학교용지	60 79 218	학교법인 달성학원	588	588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건물	하빈면 감문리 815	-	7,446.54					
78	2027년	토지	현풍읍 성하리 235-4	체육 용지	4.2	대영채비	0.11	0.09	0.02	달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제7항
79	2027년	토지	현풍읍 성하리 228-2	체육 용지	89.96	대영채비	0.8	0.7	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대한 법률 제11조의 3 제5항 “100분의 80감면”
80	2027년	건물	화원읍 비슬로 2594 2층 일부	-	122	국방부	1.6	1.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81	2027년	건물	화원읍 비슬로 2594 3층 일부	-	134	국방부	1.8	1.8	-	“국가기관 등이 사용하는 경우”
82	2027년	건물	화원읍 설화리 553-41	-	147	정인장애 인복지회 행복올타리 해피베이 커리	7	3.5	3.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제2호 및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제6항제1호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 기업이 사용”
83	2027년	건물	화원읍 설화리 553-41	-	646	달성문화 재단	102	102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 2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84	2027년	건물	화원읍 설화리 553-41	-	620	달성복지 재단	99	99	-	
85	2028년	토지	가창면 대일리 322	답	10.44	대영채비	0.04	0.03	0.01	달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제7항
86	2028년	토지	다사읍 달천리 135	답	10.44	대영채비	0.06	0.05	0.0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대한 법률 제11조의 3 제5항 “100분의 80감면”
87	2028년	토지	다사읍 문양리 산18-2	임야	8	대영채비	0.001	0.001	0.0003	
88	2028년	건물	가창면 가창로1100, 2층 일부	-	70	국방부	0.6	0.6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89	2028년	건물	구지면 창리로 11길 2층 일부	-	65	국방부	0.3	0.3	-	“국가기관 등이 사용하는 경우”

101	2028년	건물	회원읍 비슬로 2594 2층 일부	-	122	국방부	1.7	1.7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
102	2028년	건물	회원읍 비슬로 2594 3층 일부	-	134	국방부	1.9	1.9	-	“국가기관 등이 사용하는 경우”
103	2028년	건물	회원읍 설화리 553-41	-	147	정인장애인복지회 행복올타리 해피베이커리	7.4	3.7	3.7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제2호 및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제6항제1호 “취약계층 고용비용을 충족하는 사회적 기업이 사용”
104	2028년	건물	회원읍 설화리 553-41	-	646	달성문화재단	108	108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 2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105	2028년	건물	회원읍 설화리 553-41	-	620	달성복지재단	104	104	-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1. 일반재산의 개발

(단위 : m², 백만원)

일련 번호	개발 (예정) 연도	재 산 표 시				개발 방법 (종류)	위탁 기간	개발 사업규모				개발목적 (관련근거)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예산	면적	지하	지상		
계													
					해	당	없	음					

2. 일반재산의 출자

(단위 : m², 백만원)

일련 번호	출자(예정) 연도	재 산 표 시				기준가격	출자기관	출자목적 (관련근거)	비고
		종류	소재지	지목	면적				
계									
					해	당	없	음	

4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1. 총괄표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미징수금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비고
	수량	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사용료	1	7.18	0	1.196	0	1.196	0	1.196	0	1.196	0	1.196	1	1.196	
대부료	4	8.4	0	1.4	0	1.4	0	1.4	0	1.4	0	1.4	4	1.4	
매각대금						해	당	없	음						
변상금	8	69.26	1	11.81	0	11.49	0	11.49	0	11.49	0	11.49	7	11.49	

2. 항목별 징수 계획

가. 사용료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미징수금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수량	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계	1	7.18	0	1.196	0	1.196	0	1.196	0	1.196	0	1.196	1	1.196
현풍읍	1	7.18	0	1.196	0	1.196	0	1.196	0	1.196	0	1.196	1	1.196

나. 대부료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미징수금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수량	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계	4	8.4	0	1.4	0	1.4	0	1.4	0	1.4	0	1.4	4	1.4
논공읍	2	4.5	0	0.75	0	0.75	0	0.75	0	0.75	0	0.75	2	0.75
가창면	1	1.5	0	0.26	0	0.26	0	0.26	0	0.26	0	0.26	1	0.26
구지면	1	2.4	0	0.4	0	0.4	0	0.4	0	0.4	0	0.4	1	0.4

다. 매각대금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미징수금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수량	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수량	징수금액
계														
					해	당	없	음						

라. 변상금

1) 징수계획

(단위 : 건, 백만원, %)

구분	미징수금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수량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수량	징수 금액
계	8	69.26	1	11.81	0	11.49	0	11.49	0	11.49	0	11.49	7	11.49
현풍읍	2	26.94	0	4.49	0	4.49	0	4.49	0	4.49	0	4.49	2	4.49
구지면	5	42.3	0	7.3	0	7	0	7	0	7	0	7	5	7
가창면	1	0.02	1	0.02	-	-	-	-	-	-	-	-	-	-

2) 제고방안

구분	변상금 부과 주요 사유	조치계획(대책)	비고
현풍읍 원교리 12-1 2건	■ 공유재산 무단점유	■ 독촉 등 지속적 징수 관리 진행	
구지면 창리 427-5 외 2필지	■ 공유재산 무단점유	■ 독촉 등 지속적 징수 관리 진행	
구지면 창리 426 외 1필지	■ 균유지에 건축물 축조-대부 자의 거주불명 으로 대부계약 미갱신되어 변상금 부과	■ 거주지 확인시 변상금 납부 독려	
구지면 창리 457-1 외 2필지	■ 균유지에 건축물 축조-대부 자의 거주불명 으로 대부계약 미갱신되어 변상금 부과	■ 거주지 확인시 변상금 납부 독려	
구지면 창리 426-4 외 1필지	■ 공유재산 무단점유	■ 독촉 등 지속적 징수 관리 진행	
구지면 차리 453-6 외 1필지	■ 공유재산 무단점유	■ 독촉 등 지속적 징수 관리 진행	
가창면 행정리 637	■ 공유재산 무단점유	■ 독촉 등 지속적 징수 관리 진행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의 기준 및 수립에 필요한 그 밖의 정보 등이 포함된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6조의2(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 기준
2.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3.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공유재산의 계획적인 관리·처분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